

## 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흥해 약성선(농도301)도로 확포장(보조) 사업외 203 건인

67,722,489,337 원으로서

- o 명시이월 ( 77 건) 26,069,549,997 원
- o 사고이월 ( 127 건) 41,652,939,340 원
- o 계속비이월 ( 0 건) 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